첨부 2

第 16回 臨時會

2005. 6. 3(金)

檢 討 報 告

○ 계룡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

鷄 龍 市 議 會

專門委員 金 泳 鎭

– 계룡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–

檢 討 報 告

□ 制定背景

○ 2001. 1. 13부터 「장사등에관한법률」 이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과 시행령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자치단체의 원활한 장사업무를 시행하고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, 장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함.

□ 主要內容

○ 사설묘지의 난립방지와 화장의 확대로 장묘문화를 정착하도록 우리 시의 묘지정책 기본방향을 설정함(안 제3조).

○ 묘지 등의 설치제한지역을 경사도가 30퍼센트 이상인 급경사지역, 하천·제방 등의 바닥보다 낮은 저지대 등의 지역으로 정함(안 제6조).

○ 공설장사시설 등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 (안 제7조 내지 제23조)

○ 공동묘지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24조 내지 제29조).

○ 납골시설 등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30조 및 제31조).

□ 檢討意見

○ 본 제정 조례안은, 장사등에관한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자치단체의 원활한 장사업무를 시행하고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,

○ 천안, 공주, 보령 등 충남의 13개 자치단체는 이미 제정한 상태이며,

○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보이지 않으나, 본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「계룡시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」가 폐지되므로, 이에 따른 불편함이 없도록 시행규칙의 제정과, 조례의 합리적 적용·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